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년 청년인턴 모집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7. 1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1

모집분야

※ 모집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1] 공개경쟁(6명)

구분	근무지역	모집분야	모집인원	업무내용
청년인턴 (체험형)	서울 본원	사건총괄팀	1명	○ 사건기록물 분류, 관리 및 반환·문서송달 지원 ○ 조정위원회, 감정단 운영 지원 등 기타 행정 지원
		조정감정팀	2명	○ 조정기일, 감정부회의 등 의료분쟁조정절차 진행 지원 ○ 사건기록물 분류·관리, 문서송달 등 기타 행정 지원
		수탁감정팀	1명	○ 감정자료(진료기록 등) 시스템등록 및 감정부회의 지원 ○ 사건기록물 분류·관리, 문서송달 등 기타 행정 지원
		감사팀	1명	○ 윤리경영 업무 지원 ○ 감사 기초자료 분석 등 기타 행정
		기획예산팀	1명	○ ESG 경영전략 수립 지원 ○ 경영혁신 및 정부 추진과제 관리 지원 ○ 국정감사 수감 지원 등 기타 사무행정

② 제한경쟁(3명)

구분	근무지역	모집분야	모집인원	업무내용
청년인턴 (체험형)	서울 본원	장애인 ¹⁾	1명	○ 사건기록물 관리 및 송달 ○ 의료분쟁조정절차(조정, 감정) 및 수탁감정 업무 지원 ○ 조정위원회, 감정단 운영 지원 등 기타 행정
		보훈 ²⁾	1명	
	부산 지원	보훈 ²⁾	1명	○ 의료분쟁조정 사건 접수 지원 ○ 의료분쟁조정절차(조정) 업무 지원 등 기타 사무행정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제한경쟁 응시자는 공통응시자격을 함께 충족해야함

2

응시자격

■ 공통 (모두 충족)

- 임용일(2022.9.1.)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만 15세~34세 이하)
- 의료중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일(2022.9.1.)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으로서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사람 제외

■ 제한경쟁 (공통 응시자격을 함께 충족해야함)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참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참고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사규정 제61조(정년)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3

근로조건

- (채용구분) 청년인턴(채험형)
- (근무기간) '22. 9. 1. ~ 11. 30. (3개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년인턴은 채용시험 지원 시(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급여수준) 우리 원 보수규정에 따름
- (근무장소) 서울본원, 부산지원
 - 서울본원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 부산지원 : 부산광역시 중양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 13층

4

응시원서 접수 및 심사방법

■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작성 전 **증명서류(공고문 7번 참조) 사전준비** 필수, **경력사항은 유효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력만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험사항으로 기재**

※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면접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2. 7. 12.(화) ~ 7. 26.(화) 18:00 까지 (15일간)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턴모집페이지\(k-medi.recruiter.co.kr\)](http://k-medi.recruiter.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 크롬 권장, 종료시간 이후 응시원서 접수 웹페이지 자동폐쇄,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1차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의 자기소개, 지원동기,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일 : ~'22. 8. 10.(수)
※ 상기일정은 예정일로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 2차 면접심사

- 면접(예정)일 : '22. 8. 17.(수) ~ 8. 19.(금) 중
※ 서류심사 결과발표 시 면접일정 등을 확정하여 발표하며 일정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 1차 전형 서류심사를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자의 역량 평가 및 전문성 등을 종합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발표예정일 : ~'22. 8. 24.(수)
※ 상기일정은 예정일로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 임용예정일 : '22. 9. 1.(목)

6

가산점

■ 가산점 부여방법

가산점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 1) 증명서류는 응시자 이름으로 발급이 가능해야함
- 2) 필수 지원 자격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보훈제한경쟁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산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한 경우 (알리오기준)

- **응시서류:**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인턴모집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정양식)
 - ※ 직장 경력사항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경력증빙서류(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로 인정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기재
- **증명서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업로드)

■ 공통서류

- 증명사진 (JPG파일, 파일명은 지원분야_성명)
- 경력증명서 (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가급적 관련 수행업무 명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직장가입자 이력 확인용)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 및 면허)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수료)증명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대상자 필수)
 - * 분교의 경우 분교 졸업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제출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확인서
 - *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제출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서류제출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최초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 ※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임용예정일 기준 경력·자격요건 미달, 고용형태, 가점여부 착오기재 등)에는 **면접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 ※ 제출된 자료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심사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

□ 모집서류의 반환

- 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집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 및 당사자의 자발적 제출의 경우 제외, 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응시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와 증명서류의 경력사항 불일치 및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경력, 기간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 시 4대 보험 자격 득실(2종 이상) 및 **소득금액 증명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모집 페이지에서 지원자가 “최종지원”을 한 경우 지원취소 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오니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반드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근무지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에 면직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 임용일 변경 및 겸직 불가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 후에라도 지원서 허위·착오기재(고용형태, 임용예정일 기준 경력·자격요건 미달, 가점여부 착오기입), **부정한 행위자, 신체검사 부적합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부정한 행위 또는 인사채용 비위로 인하여 임용이 취소된 경우 처분일로부터 5년간 우리 원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집 관련 일반사항, 서류반환, 이의신청 등 유선 문의>

- 인사담당자 : 02-6210-0134
- 문의 시간 : 평일 09시~12시, 13시~18시